

의안번호	2211080
의 퇴 인	김성원의원
회 답 일	2025.8.25.
추계번호	25D3437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,109억 9,800만원(연평균 22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배우자승계	23,779	22,985	22,193	21,407	20,634	110,998	22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기간 동안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의 적용대상을 현재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¹⁾를 포함하고, 개정안 시행 전 기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율과 배우자사망률은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과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개요

- 법 제6조의3 및 「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」²⁾에 따라 2022년부터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

[표 2] 생계지원금 지급 현황

구분		2022	2023	2024
지급인원 (명)	참전명예수당 수급자	3,337	3,295	6,243
	고엽제 수당 수급자	84	131	488
	합계	3,421	3,426	6,731
월 지급단가(천원)		100	100	100
소요예산(백만원)		4,105	4,111	8,077

자료: 국가보훈부

1) 고엽제환자 중 97%의 월납전 참전유공자로 '참전유공자법' 개정 시 적용을 받음

2) 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-7호

나.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(안 제6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-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 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,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50% 미만인 경우 생계지원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- (지급대상)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사망자 수를 추정한 후, 그에 따른 배우자수를 추정
- 유공자 사망자 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한 후, 기 사망유공자의 미망인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8.1%를 적용 후 신규미망인 수를 합하여 누적 미망인 수를 추정
 - 통계청 2022년 기준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비율 약 13.16%³⁾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를 추정

[표 3]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
참전 유공자	사망자 수(A)	7,803	7,171	6,590	6,057	5,566
	신규 미망인 발생자 수(B=A×유배우자율)	5,626	5,170	4,751	4,367	4,013
	누적 미망인 수(Ct=Ct-1×(1-사망율)+B)	129,175	123,882	118,599	113,359	108,190
	생계지원금 대상자 수(D=Ct×13.16%)	16,999	16,303	15,608	14,918	14,238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	사망자 수(E)	2,728	2,763	2,799	2,835	2,872
	신규 미망인 발생자 수(F=E×유배우자율)	1,967	1,992	2,018	2,044	2,071
	누적 미망인 수(Gt=Gt-1×(1-사망율)+F)	21,408	21,666	21,929	22,197	22,470
	생계지원금 대상자 수(H=Gt×13.16%)	2,817	2,851	2,886	2,921	2,957
생계지원금 대상자 수 합계(D+H)		19,816	19,154	18,494	17,839	17,1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(80세 이상 여성 중 기초생활수급인원 + 70세 이상 여성 중 차상위 인원) / 80세 이상 여성 총 인구

- (지원단가)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최근 4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, 추계기간 동안 10만원으로 가정
- (추가재정소요)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에 생계지원금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,109억 9,800만원으로 추정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지급대상(명)	19,816	19,154	18,494	17,839	17,195	—
월 지급단가(만원)	10	10	10	10	10	—
소요비용(백만원)	23,779	22,985	22,193	21,407	20,634	110,998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,109억 9,800만원(연평균 22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배우자승계	23,779	22,985	22,193	21,407	20,634	110,998	22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 시행 이전 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비율을 통계청 2025년 기준 80세 이상 여성 중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비율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
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